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제1항 단서)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제1항 및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제7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바.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 교 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법무부 소관) 홍 윤 식

●법률 제14413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